|  |  |  |
| --- | --- | --- |
|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령 제76호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선창위(申長雨)  2017년 6월 7일  제1조 산업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국가의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와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을 촉진시키며 서비스 혁신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허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이하 '특허법 실시세칙'으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 또는 안건의 우선심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1) 실질심사 단계의 발명특허 출원;  (2) 실용신안•의장 출원;  (3) 발명•실용신안•의장 출원에 대한 재심;  (4) 발명•실용신안•의장의 무효선고.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구 간에 체결된 양자간•다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우선심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방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재심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1)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지식통합생산 등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우;  (2) 각 성(省)급 및 산하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우;  (3)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와 관련되었으며 기술 또는 제품의 갱신 속도가 빠른 경우;  (4) 특허출원인 또는 재심청구인이 이미 실시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또는 그의 발명창조를 타인이 실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5) 동일한 주제로 처음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도 출원한 당해 중국에서의 최초 출원;  (6)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 우선심사가 필요한 기타의 경우.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효선고 안건에 대하여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1) 무효선고 안건과 연관된 특허의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미 지방 지적재산권국에 처리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중재조정조직에 중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2) 무효선고 안건과 연관된 특허가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  제5조 특허출원, 특허재심 안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출원인 또는 전체 재심청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무효선고 안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무효선고청구인 또는 전체 특허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안건과 연관된 특허의 권리침해 분쟁을 처리•심리하는 지적재산권국, 인민법원 또는 중재조정조직은 무효선고 안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출원, 특허재심 안건, 무효선고 안건의 수량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각 전문기술 분야의 심사능력, 직전연도의 특허권 수여량 및 당해 연도의 심사대기 안건 수량 등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7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재심 안건의 우선심사 청구는 전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8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우선심사청구서, 기존 기술 또는 기존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와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3조 제5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심사청구서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급 지적재산권국의 추천의견이 있어야 한다.  특허재심, 무효선고 안건의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우선심사청구서와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 또는 초보심사 단계에서 이미 우선심사가 이뤄진 특허재심 안건을 제외하고 우선심사청구서에는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급 지적재산권국의 추천의견이 있어야 한다.  무효선고 안건의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지방 지적재산권국, 인민법원, 중재조정조직은 우선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 청구를 접수 및 심사한 후 지체없이 심사의견을 우선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1) 발명특허 출원은 45일 내에 제1차 심사의견 통보서를 발송하고 1년 내에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2) 실용신안과 의장 출원은 2개월 내에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3) 특허재심 안건은 7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4) 발명 및 실용신안의 특허무효선고 안건은 5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의장의 특허무효선고 안건은 4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또는 보정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심사의견 통보서에 대하여 출원인은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실용신안 및 의장 심사의견 통보서에 대하여 출원인은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15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지체없이 우선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 청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출원인이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출원서류의 수정 요구를 제기한 경우;  (2) 출원인이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답변기한을 넘긴 경우;  (3) 출원인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심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으로 판명된 경우.  제13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재심 또는 무효선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우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지체없이 우선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이 답변기한을 넘긴 경우;  (2) 우섬심사 청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무효선고청구인이 증거와 이유를 보충한 경우;  (3) 우선심사 청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특허권자가 삭제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권리요구서를 수정한 경우;  (4) 특허재심 또는 무효선고 절차가 중지된 경우;  (5) 안건 심리가 기타 안건의 심사결론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  (6)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으로 특허재심위원회의 비준을 득한 경우.  제14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  国家知识产权局令第七十六号  　　《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已经局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7年8月1日起施行。  局 长　申长雨  2017年6月27日  　　第一条 为了促进产业结构优化升级，推进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和知识产权强国建设，服务创新驱动发展，完善专利审查程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和《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下列专利申请或者案件的优先审查适用本办法：  （一）实质审查阶段的发明专利申请；  （二）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  （三）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的复审；  　　（四）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的无效宣告。  　　依据国家知识产权局与其他国家或者地区专利审查机构签订的双边或者多边协议开展优先审查的，按照有关规定处理，不适用本办法。  　　第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申请或者专利复审案件，可以请求优先审查：  　　（一）涉及节能环保、新一代信息技术、生物、高端装备制造、新能源、新材料、新能源汽车、智能制造等国家重点发展产业；  　　（二）涉及各省级和设区的市级人民政府重点鼓励的产业；    （三）涉及互联网、大数据、云计算等领域且技术或者产品更新速度快；  　　（四）专利申请人或者复审请求人已经做好实施准备或者已经开始实施，或者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其发明创造；  　　（五）就相同主题首次在中国提出专利申请又向其他国家或者地区提出申请的该中国首次申请；  　　（六）其他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需要优先审查。  　　第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无效宣告案件，可以请求优先审查：  　　（一）针对无效宣告案件涉及的专利发生侵权纠纷，当事人已请求地方知识产权局处理、向人民法院起诉或者请求仲裁调解组织仲裁调解；  　　（二）无效宣告案件涉及的专利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  　　第五条 对专利申请、专利复审案件提出优先审查请求，应当经全体申请人或者全体复审请求人同意；对无效宣告案件提出优先审查请求，应当经无效宣告请求人或者全体专利权人同意。  　　处理、审理涉案专利侵权纠纷的地方知识产权局、人民法院或者仲裁调解组织可以对无效宣告案件提出优先审查请求。  　　第六条 对专利申请、专利复审案件、无效宣告案件进行优先审查的数量，由国家知识产权局根据不同专业技术领域的审查能力、上一年度专利授权量以及本年度待审案件数量等情况确定。  　　第七条 请求优先审查的专利申请或者专利复审案件应当采用电子申请方式。  　　第八条 申请人提出发明、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申请优先审查请求的，应当提交优先审查请求书、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信息材料和相关证明文件；除本办法第三条第五项的情形外，优先审查请求书应当由国务院相关部门或者省级知识产权局签署推荐意见。  　　当事人提出专利复审、无效宣告案件优先审查请求的，应当提交优先审查请求书和相关证明文件；除在实质审查或者初步审查程序中已经进行优先审查的专利复审案件外，优先审查请求书应当由国务院相关部门或者省级知识产权局签署推荐意见。  　　地方知识产权局、人民法院、仲裁调解组织提出无效宣告案件优先审查请求的，应当提交优先审查请求书并说明理由。  　　第九条 国家知识产权局受理和审核优先审查请求后，应当及时将审核意见通知优先审查请求人。  　　第十条 国家知识产权局同意进行优先审查的，应当自同意之日起，在以下期限内结案：  　　（一）发明专利申请在四十五日内发出第一次审查意见通知书，并在一年内结案；  　　（二）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在两个月内结案；  　　（三）专利复审案件在七个月内结案；  　　（四）发明和实用新型专利无效宣告案件在五个月内结案，外观设计专利无效宣告案件在四个月内结案。  　　第十一条 对于优先审查的专利申请，申请人应当尽快作出答复或者补正。申请人答复发明专利审查意见通知书的期限为通知书发文日起两个月，申请人答复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审查意见通知书的期限为通知书发文日起十五日。  　　第十二条 对于优先审查的专利申请，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知识产权局可以停止优先审查程序，按普通程序处理，并及时通知优先审查请求人：  　　（一）优先审查请求获得同意后，申请人根据专利法实施细则第五十一条第一、二款对申请文件提出修改；  　　（二）申请人答复期限超过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期限；  　　（三）申请人提交虚假材料；  　　（四）在审查过程中发现为非正常专利申请。  　　第十三条 对于优先审查的专利复审或者无效宣告案件，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复审委员会可以停止优先审查程序，按普通程序处理，并及时通知优先审查请求人：  　　（一）复审请求人延期答复；  　　（二）优先审查请求获得同意后，无效宣告请求人补充证据和理由；  　　（三）优先审查请求获得同意后，专利权人以删除以外的方式修改权利要求书；  　　（四）专利复审或者无效宣告程序被中止；  　　（五）案件审理依赖于其他案件的审查结论；  　　（六）疑难案件，并经专利复审委员会主任批准。  　　第十四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十五条 本办法自2017年8月1日起施行。2012年8月1日起施行的《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同时废止。 |